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4일,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9.24.)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모경종의원)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  
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기영)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현행법상 민방위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개정안은 ‘적(敵)의 침투 도발 또는 전단·물품 투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오물풍선 살포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개정안은 피해지원 대상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

으므로,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서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행정입법 마련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 정하되, 피해가 기발생하였고 북한의 도발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일정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